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1.

발 의 자: 송언석·김정재·김영식

김석기 • 권명호 • 임이자

김상훈 • 곽상도 • 박완수

박대수 · 성일종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(Venture Capital)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심각한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,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 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2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중 "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"를 "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"로, "一般持株會社"를 "일반지주회사"로, "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"를 "금융업 또는 보험업(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"금융업이나"를 각각 "금융업 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第8條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第8條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한 등) ① (생 략) 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 5.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 | (이하 "一般持株會社"라 한 -----일반지주회사-----다)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 -----금융업 또는 보험 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 업(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式을 所有하는 행위. 다만, 일 률 |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및 「여신전문금융업 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 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 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 일반지주회사로 전화하거나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소유-----있다.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2. (생략)
- 3.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. 다만,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.

④ ~ ⑦ (생 략)

| 1.•2. (현행과 같음) | |
|------------------|--|
| 3. <u>금융업 또는</u> | |
| | |
| , | |
| | |
| 업 또는 | |
| <u> </u>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| |